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0644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1. B
	2. [redacted]군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6. 2. 22. 접수 제158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redacted]군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1. 기초 사실

○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6. 2. 22. 접수 제1585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피고 [redacted]군은 2016. 6. 1.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6. 6. 3. 접수 제55204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redacted]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redacted]군에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 [redacted]군은 원고에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전연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04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도 [redacted]시 C에 있는 D아파트 제102동

[도로명주소] [redacted]도 [redacted]시 E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지하1층 411.240㎡

1층 411.240㎡

2층 내지 4층 각 401.160㎡

5층 내지 15층 각 394.4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redacted]도 [redacted]시 C 대 27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제804호 철근콘크리트조 84.946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7892분의 48.212. 끝.